

[본조신설 2018. 9. 18.]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개정 2015. 6. 22.>

-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6. 22.]

제38조의2 삭제 <2015. 6. 22.>

-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8. 9.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 ②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 제40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 6. 22.>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삭제 <2015. 6. 22.>
-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 ④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